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보고서

2021. 2. 18.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30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1. 5. (허주연 의원 대표발의)
- 나. 상정의결
 -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1.2.18.)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허주연 의원)

- 가. 제안이유
 -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제한과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리(안 제2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안 제6조의2~제6조의8)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0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생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우리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¹⁾ 및 제14조²⁾에 따라 체조팀³⁾ 운동경기부를 2003.5.1.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경기인을 채용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원회는 위원장인 뉴디자인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여 당연직 문화체육과장을 제외하고는 위촉직 5명(구의원 1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에서는 현행 제5조의 규정을 위원회 구성 원칙에 맞게 재구성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의3(위원의 임기) 및 제6조의4(위원의 해촉)에서는 현행 위원의 임기와

1)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체조팀: 총7명(감독 1명, 선수 6명)

해촉 규정이 없는 바 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미비로 동일 위원들이 계속하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많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및 제6조의6(위원회의 운영)에서는 부위원장의 대행과 위원회의 중요한 결정기준인 의결정족수와 위원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6조의8(수당 등)에서는 공정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규정과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현재 일부 동일한 위원이 8년간 장기간 위촉되고 있는 바 이를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보임. 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 종전 위원에 대하여 연임제한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주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
----------	-----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의자 : 허주연·박다미·이향숙·
김현정·김세준·문백한·
이도희(이상7인)

1. 제안이유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제한과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안 제6조2~제6조의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경기인 채용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뉴디자인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뉴디자인국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의7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도,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뉴디자인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p> <p>1.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p> <p>2.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p>	<p>제2조(정의) ----- - 용어의 뜻----- -.</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경기인 채용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 둔다.</p>

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뉴디자인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뉴디자인국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신 설>

<신 설>

<신 설>

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의7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신 설>

<신 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
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